

제1800호

2021. 2. 4.(목)

발행인 : 영등포구청장
편집인 : 홍보미디어과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23
전화 : 02-2670-7561

영등포구보

입법예고

- 제2021-173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동물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고 시

- 제2021-17호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고시 5
- 제2021-19호 도로명주소 부여, 폐지 고시 6

공 고

- 제2021-181호 직인 인영 공고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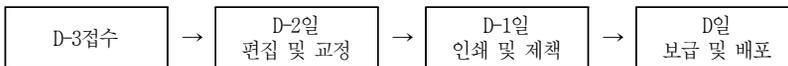
※ 구보게재를 의뢰한 각 부서에 알려드립니다.

구보의 게재내용은 영등포구홈페이지<<http://www.ydp.go.kr>(영등포소식→새소식→영등포구보)>에 게재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보게재의뢰 및 편집문의 (☎ 02-2670-7561 / 전송: 02-2670-3581)

◎ 구보발행일은 매주 목요일 (공휴일인 경우 익일 발행, 공포 등 필요시 발행일 조정 가능)

◎ 구보게재접수는 D-3일(월요일)까지 접수



영등포구 발간등록번호

3180244-0010-2021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고 제2021-173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동물 보호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2월 4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동물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동물의 유기와 학대를 줄이기 위해 반려동물 영업자와 그 종사자는 등록대상 동물의 등록 및 변경 신고 의무의 고지에 관한사항을 준수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 으로 「동물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법령에 정의된 용어에 대해 자치법규에서 다시 용어 정의를 하지 않도록 함에 따라 용어의 정의 조항 일부 삭제(안 제2조)
- 등록대상 동물에 대한 등록 방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등록대상 동물에 인식표를 장착하는 방식을 폐지(안 제7조)

3. 의견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참조: 일자리경제과장,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동1로 80, 전화: 02-2670-3417, 팩스: 02-2670-362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기타 필요한 의견사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동물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동물 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등록대상동물”이란 보호, 유실·유기방지, 질병의 관리,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을 위하여 등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동물보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

6.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제3항 중 “「동물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5조”를 “시행령 제5조”로 한다.

제7조제1항 본문 중 “제2조제2호에 따른 등록대상동물”을 “등록대상동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등록대상동물에게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이하 “무선식별장치”라 한다) 또는 등록인식표”를 “등록대상동물에 무선식별장치”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생 략)</p> <p>2. “<u>등록대상동물</u>”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주택·준주택이 아닌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월령(月齡) 3개월 이상인 개를 말한다.</p> <p>3. “<u>반려동물</u>”이란 반려(伴侶)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p> <p>4. “<u>소유자 등</u>”이란 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동물을 사육·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을 말한다.</p> <p>5. (생 략)</p> <p><신 설></p>	<p>제2조(정의)----- -----.</p> <p>1. (현행과 같음)</p> <p>2. “<u>등록대상동물</u>”이란 보호, 유실·유기방지, 질병의 관리,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을 위하여 등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u>동물보호법 시행령</u>」(이하 “<u>시행령</u>”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p> <p><삭 제></p> <p><삭 제></p> <p>5. (현행과 같음)</p> <p>6.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법 제2조에 따른다.</p>
<p>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② (생 략)</p> <p>③ 구청장은 「<u>동물보호법 시행령</u>」(이하 “<u>영</u>”이라 한다)제5조에 따른 민간단체에 동물보호운동이나 그 밖에 이와 관련된 활동을 권장하거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p>	<p>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u>시행령 제5조</u>----- ----- -----.</p>
<p>제7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 ① 제2조제2호에 따른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동</p>	<p>제7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 ① <u>등록대상 동물</u>-----</p>

물의 보호와 유실·유기방지 등을 위하여 구청장에게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동물등록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자(이하 “등록대행자”라 한다)를 지정한 경우 소유자는 등록대행자에게 소유하고 있는 동물을 등록하여야 하며,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② 등록대행자는 제1항에 따라 등록된 등록대상동물에게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 (이하 “무선식별장치”라 한다) 또는 등록인식표를 장착 후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기록하여야 하며, 등록대상동물이 등록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사항을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④ (생략)

② ----- 등록대상 동물에 무선식별장치-----

③·④ (현행과 같음)

고 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시 제2021-17호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고시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 동법 시행규칙 제6조의2 제4항에 따라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 건에 대하여 아래 공동주택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21년 2월 4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1. 지정취지

공동주택 내 공용공간인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지정내용

지정번호	공동주택명	금연구역 지정 범위	소재지
제14호	e편한세상영등포아텔포레아파트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영등포구 신길로 29

3. 금연구역 지정 시행일: 2021. 2. 4.

4. 홍보 및 계도 기간: 2021. 2. 4.~ 2021. 5. 3.(3개월)

5. 금연구역 내 흡연단속

- 과태료 부과일: 2021. 5. 4.
- 과태료 부과 금액: 5만원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보건소 보건지원과(☎2670-4900)으로 문의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시 제2021-19호

도로명주소 부여, 폐지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제24조, 제25조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 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2월 4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 도로명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중로 116 (영등포동8가) 외 8건

(별지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등포구청 부동산정보과(☎2670-3722)에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 도로명주소 부여 조서

연번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이동사유	도로명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고시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림동 1081-7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디지털로38길 7 (대림동)	20210204	신규부여	20100527	디지털로에서 분기되는 도로로 해당 일련번호 활용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8가 45-5, 45-6, 45-7, 45-12, 45-1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중로 116 (영등포동8가)	20210204	신규부여	20100527	영등포동 중앙을 통과하는 도로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1가 31-3, 31-4, 32-4, 32-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인로112길 17 (영등포동1가)	20210204	신규부여	20100527	경인로에서 분기되는 도로로 해당 일련번호 활용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7가 64-2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44길 5-1 (영등포동7가)	20210204	신규부여	20100617	국회대로에서 분기되는 도로로 해당 일련번호 활용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림동 1081-3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디지털로 351-7 (대림동)	20210204	신규부여	20090710	디지털단지의 상징성 및 접근성	

■ 도로명주소 폐지 조서

연번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고시일	비고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 89-1 (양평동4가)	2021-02-01	2021-02-04	대장 말소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림로63다길 6-2 (신길동)	2021-02-01	2021-02-04	대장 말소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림로63길 10-3 (신길동)	2021-02-01	2021-02-04	대장 말소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 245-1 (영등포동2가)	2021-02-01	2021-02-04	대장 말소

공 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고 제2021-181호

직 인 인 영 공 고

서울특별시영등포구회계관계공무원직인규칙 제7조에 의거 등록된 직인의 인영을 동규칙제11조에 의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4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 가. 직인명
 - 서울특별시영등포구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
 - 서울특별시영등포구통합재정안정화기금출납원

나. 직인최초사용 연월일 : 2021. 2. 4.

다. 직인의 인영 및 내역

직 인 명	서체 및 규격 재질	인 영	사용부서	용 도
서울특별시영등포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관	한글전서체 2cmx2cm (정방형) 플라스틱		기획예산과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출납
서울특별시영등포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출납원	한글전서체 1.8cmx1.8cm (정방형) 나무		기획예산과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출납